

의안번호	2221564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2.
추 계 번호	26B4980

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제1항 (빈집은행사업의 시행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빈집은행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음 ※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까지 확대	재량규정
2	안 제28조제2항 (빈집은행사업의 시행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빈집은행사업의 일부를 제27조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은행사업의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8조제1항 (빈집은행사업의 시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8조제2항 (빈집은행사업의 시행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빈집은행사업

의 시행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까지 확대하고, 사업의 위탁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, 시장·군수에게 빈집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- 빈집은행사업은 빈집의 매매·임대차 관련 정보 및 빈집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사업으로서, 사업의 시행 주체가 확대되더라도 기존에 구축된 행정정보와 사업 수행체계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이나 시설을 신설하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- 그러나,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, 사업 운영비,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비 및 위탁수수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빈집은행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, 사업 규모, 추진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이고,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결정될 사안이므로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주체별 재정변동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

○ 목 적

- 청년 취·창업, 주거·위케이션 공간, 생활인구 체류 공간 등으로 빈집 재생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성공사례 확산

○ 사업내용

- '빈집우선정비구역'의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단·장기 체류형 주택,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지원

○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상 농촌지역을 포함한 시·군

○ 지원내용 및 예산

- 지원 내용 : 빈집 리모델링,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
- 지원 기준 : 국고 30%, 지방비 50%, 민간* 20%
- * 상생협력기금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
- '26년 예산 : 825백만원(국비 248, 지방비 412, 민간 165)

○ 시행근거(법령)

- 농어촌정비법

○ 사업신청

- 시장·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된 시·군 지역 내 빈집이 집단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·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('26.2월)

○ 대상자 선정

-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시·군 선정

[참고자료 2] 어촌에서 살아보기(귀어인의 집) 사업

○ 목적

-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,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후 귀어할 수 있도록임 시거처인「귀어인의 집」조성하여, 일정기간 동안제공·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

○ 근거법령
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21조(귀어업인의 육성)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귀농어업인·귀촌인 정착 지원)

○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합 계	300	300	300	300
-국 비(50%)	150	150	150	150
-지방비(50%)	150	150	150	150

○ 사업대상자

-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이하“사업대상자”라 한다.)

*귀어인의 집 구입이나,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

○ 지원자격 및 요건

*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
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
- 사업신청일 현재 귀어귀촌 관련 사업,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등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민 어촌유치와 귀어귀촌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
-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, 체험, 정보 제공 등 지속적관리가 가능한 사업대상자

○ 지원금의 사용용도
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대상자가 주택(빈집)을 매입·임차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리모델링, 이동식 주택구입, 임대 운영 등의 비용으로 지원

○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지원조건(재원) :국고50%,지방비50%

*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·도와 시·군·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